

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(3차)_'21.9.1.

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,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'21.6.30.시행)에 따라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'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'을 오픈 하였으며,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따라서, 준요양기관이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신하여 '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'을 공단에 전산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10월초 오픈예정입니다.(별도 안내예정)

아울러,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'**21.10.31.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재연장**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

'21.11.1.부터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(공단에 위임장 및 구비서류 제출)을 받은 준요양기관만 우리공단에 요양비를 직접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(신)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s://medicare.nhis.or.kr>) → 공지사항 '**요양비 청구 제도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(3차)**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 위임장 제출 없이 청구 가능 건》

❖ 제도시행 유예기간 대상

- (대상) '21.6.30.부터 10.31.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
- (내용)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
 - * 단,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
- (조건) 전산청구, 서면청구 병행 가능
- (적용) 2021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
 - * '전산청구'는 최종 제출일, '우편'은 우체국 소인일, '방문'은 방문접수일 기준

❖ 제도시행 이전 대상

- (대상) '21.6.29.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
- (내용)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
- (조건) 법령 개정 전 방식에 따라 전산청구, 서면청구 병행 가능
- (적용) 2021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
 - * '전산청구'는 최종 제출일, '우편'은 우체국 소인일, '방문'은 방문접수일 기준